

협회소식 / 95

건축계소식 / 97

게시판 / 100

현상설계 / 102

해외잡지동향 / 111

회원현황 / 11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8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개최

비상근부회장에 우남용 서울건축사회 회장 선임
사무처 조직 축소, 직원 희망퇴직제 시행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12월 8일(제16회)과 28일(제17회)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각 회차별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6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99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99년도 위원회 구성안중 연합회제도 연구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하고,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2호의안: 비상근부회장 선임 승인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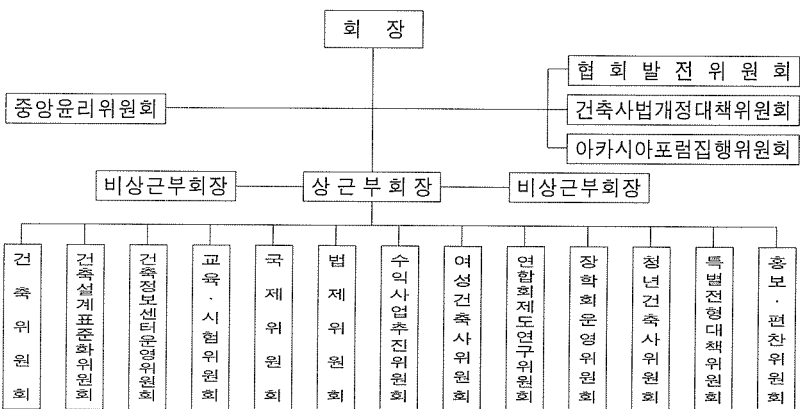
- 비상근부회장으로 우남용 서울건축사회 회장을 선임기로 함
- 제3호의안: 고문변호사 선임 승인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4호의안: 대한건축사협회장학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사무조직은 구성하지 않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키로 하고,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5호의안: 임의적립금 차임기간 연장 승인의 건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97년도 제11회 이사회(97. 7. 29) 의결을 거쳐 실시 차입한 378,400,000원중 미상환금 128,400,000원에 대하여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99년 상환일까지 연장키로 함
- 제6호의안: 건축법시행령개정대책기구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건축법시행령개정대책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키로 하되, 위원은 협회발전위원회와 건축사법개정대책위원회, 법제위원회 위원들중 법제담당 이사와 협의하여 위촉키로 함.

○ 제17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직제개편(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직제의 단순화·효율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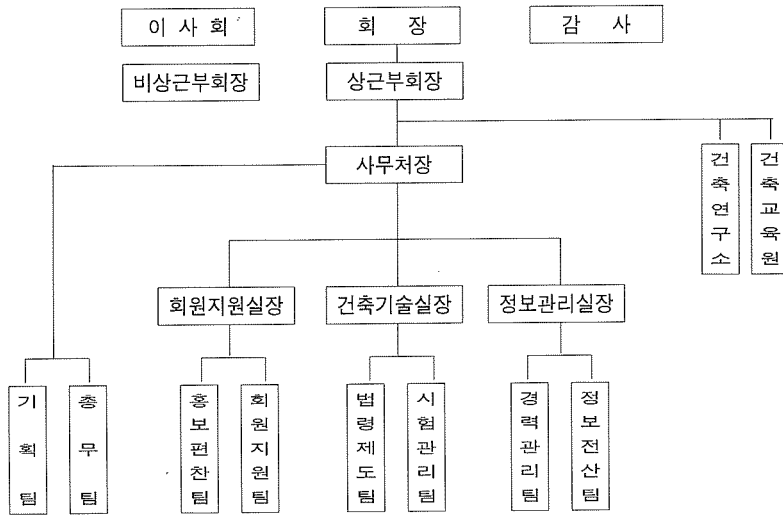
〈위원회 조직 구성도〉



※ 기타: 경력관리위원회, 노사협의회, 연구심의위원회, 예산편성위원회, 인사위원회

□ 는 신설위원회

<직제>



※ □ 직원이 없는 직제임

위해 본부장은 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은 현 4실8팀1연구소1교육원에서 3실8팀으로 축소하는 한편 건축연구소 및 건축교육원은 직제만 존속시켜 연구소업무는 건축기술실로, 교육원업무는 정보관리실로 이관

- 제2호의안: 인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인사규정중 개정규정(안) 주요내용>
 - 신설: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따라 1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으로 한다.(규정 제26조제⑤항)
- 제3호의안: 보수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인사규정중 개정규정(안) 주요내용>
 - 개정: ... 지급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26조5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간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규정 제13조)
- 제4호의안: 희망퇴직제 시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98년 12월 28~31일 기간중에 본협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을 받아 심사후 통지키로 하고 퇴직자에 대한 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98년 월평균보수액의 3.8~4.5개월분을 지급키로 함)

- 제5호의안: 직원 정년퇴임에 따른 공로패 수여 승인의 건
 - 협회재직중 건축계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자 경기도건축사회 김동국 사무국장과 권중호 총무부장 2인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키로 함

협회 구조조정 본격화

사무처 직원 35% 감축, 직제도 축소 개편

협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됐다. 협회는 지난해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신청을 받아 전체직원의 35%에 이르는 인원을 감축한데 이어 사무처 조직도 현 4실8팀1연구소1교육원에서 3실8팀으로 축소 개편했다. 사무처 조직개편은 직제의 단순·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현 본부장의 명칭을 처장으로 변경하고 팀 중심의 조직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건축연구소와 건축교육원은 직제만 존속시켜 연구소업무는 건축기술실로, 교육원업무는 정보관리실로 이관했다.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건축신고범위 확대에 대해 '적용범위 축소' 의견 제출

협회는 건축신고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해 정부가 마련한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신고범위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택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해 건축신고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건축신고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부분 주택, 근린생활 등 소규모건축물에서 불법·부실건축물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칫

건축신고범위(제11조) 확대에 대한 협회의견

현행	입법예고(안)	협회(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구역 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100㎡미만 - 주택, 창고: 200㎡미만 - 작물재배사: 200㎡미만 •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100㎡미만 - 창고: 200㎡미만 - 축사, 작물재배사: 400㎡미만 • 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건축물: 50㎡이하 - 주택: 1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창고: 200㎡이하 - 축사, 작물재배사: 400㎡미만 • 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이하로서 150㎡이하인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2층이하로서 100㎡이하 - 창고: 200㎡이하 - 축사, 작물재배사: 400㎡이하 • 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이하로서 100㎡이하인 건축물